

교원업적평가 규정 7-7

제정 2005.03.01.

개정 2024.02.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장에 의거 교원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활동, 수범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승진임용, 기간제 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우수교원 선정 등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과 교수의 자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외국인 전임교원은 외국인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7.22., 2020.04.01.>
- ② 평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제외자에 대한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등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07.22.> <개정 2022.09.01.>
- ③ 강사와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의 업적평가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7.22.>

제3조(평가기간 및 시기)

- ① 평가는 1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2.>
- ② 재임용 및 승진의 평정은 매년 평가한 평정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평가영역 및 정의) 평가영역은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활동, 수범활동로 하며 평가활동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은 학생에 대한 수업, 신입생 유치활동,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역저, 편저, 보고서, 단행본, 학회활동, 학술강연, 창작활동, 발표 및 전시회 등의 연구활동을 말한다.
3.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및 자문활동과 교내외에서의 보직수행, 위원회 활동 등 학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활동 등을 말한다.
4. 산학활동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와 산학 관련 각종 활동의 참여를 말한다.
5. 수범활동은 교육자로서의 품위, 제반법규 준수와 교직원간 화합 및 학교발전 기여도 등을 말한다.

제 2 장 심사기구 및 절차

제5조(평가위원회)

- ① 업적평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사운영처장, 기획처장, 입학·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4.01.> <개정 2023.03.01.>
- ③ 위원 수는 계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
- ④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03.01.>
-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업적평가서 종합 심사

2. 평가보고서 작성
3.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건의
4. 우수교원 선정
5.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사
6.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제반사항
- ⑦ 심사자 자신의 실적심사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심사절차)

- ① 평가대상교원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본인의 업적평가서(별지 서식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하며(11월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운영처장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3.01.>
-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개인별 업적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평 정표(별지 서식2)에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범활동 항목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평가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평가대상 교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우수교원 선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02.22.>
- ⑤ 삭제<개정 2024.02.22.>

제8조(재심 신청)

- 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학사운영처를 경유 총장에게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기일까지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범활동 항목은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3.01.>
- ② 평가대상자의 재심신청이 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통보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9조(평가대상 및 구분)

- ① 평가영역은 제4조에 의하되 연구업적평가는 계열별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 <개정 2020.04.01>
- ② 다만 소속계열(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타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교원업적평가의 총점은 최대 200점 만점으로 하며, 가산점이 있을 경우 평가영역별 최대 인정 점수를 한도로 하여 누진하여 총점수로 산정한다.
- ④ 업적평가 대상자 중장기 출장, 연수, 휴직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 실적 제출이 곤란한 업적평가 항목에 대해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업적평가 실적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04.01>

- ⑤ 평가영역별 최대 인정 점수는 일반트랙(일반 전임교원 대상)과 산학트랙(산학협력중점교수 대상)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 각 영역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정한다. 다만,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일반 전임교원 대상 평가기준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대상 평가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4.01>

평가영역	일반전임교원 대상	지정형(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 대상
교육활동	60점	50점
연구활동	10점	5점
봉사활동	10점	5점
산학활동	80점	100점
수범활동	40점	40점
계	200점	200점

제10조(교육활동의 평가기준) 교육활동의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연구활동의 평가기준)

- ① 연구활동의 실적평가는 년도 단위로 평가한다.
- ② 모든 계열의 연구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및 인정환산율은 (별표2-3) 과 같다.
- ③ <삭제 2020.04.01>

제11조의 2(봉사활동 평가기준) 봉사활동의 실적평가는 년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산학활동의 평가기준) 산학활동의 실적평가는 년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수범활동의 평가기준) 수범활동의 실적평가는 년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4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활용범위)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우수교원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동점자에 대한 순위결정) 동점자에 대한 순위결정은 수범, 산학, 교육, 연구, 봉사활동 실적의 다득점 순위로 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2002년도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1. 2003년도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2004년도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

대상자부터는 이 규정에 의한 평점에 의하여 심사하며, 이 규정 개정 이전의 교원업적평가 평점은 인정치 않는다. 또한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심사는 평정기간 전체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평점의 평균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규정 개정 이전의 교원업적평가 평점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이 규정 개정 이후부터의 교원업적평가 평점만을 가지고 심사토록 한다.

2. 2003년도 교원업적평가에 한해 2003년 10월 말까지 정읍시로 이주할 경우 (가족 포함. 다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본인 거주만으로 인정)에는 교육활동 평가기준의 정읍시 미거주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2004년도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2005년도 승진임용, 기간제임용(재임용) 및 연봉제(계약제) 적용대상자부터는 이 규정에 의한 평점에 의하여 심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2005년도 교원업적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6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2016년도 교원업적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17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별표4(산학활동 평가기준)의 3은 2022년도부터 적용하며,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본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별표1(교육활동 평가기준), 별표5(수범활동평가기준) 및 별지 서식2(전임교원 업적 평가표)의 개정사항은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하고, 2022년도 교원업적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활동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개정 2022.03.01.> <개정 2022.11.01.> <개정 2023.03.01.>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일반	산중	비고												
교육개발	교육과정 개발(개선) 또는 평가	교육과정 개발(개선) 또는 평가 보고서 1건당 2점	2	2													
	교수 역량 개발	교수역량개발 프로그램 참여 1건 당 0.5점	2	1													
	특수교과목 개발 및 교육 운영	-융합교과목 개발·운영 1건당 1점 -이러닝 교육 개발/운영 1건당 1점 -다전공 교육 개발/운영 1건당 1점 ※ 참여교수 모두 적용.	2	1													
수업담당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 기간내 입력시 2점, 기간내 미 입력시 강좌당 0.5점씩 감점	2	2													
	강의시간	- 책임시수 이행 2점 - 책임시수 초과 1시수당 1점 가점 - 책임시수 미달 1시수당 1점 감점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책임시수 미달의 경우 감점적용 하지 않음 ※ 1학기 및 2학기 값을 각각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	5	2													
	강의 이행상태	- 무단결당(보강미이행포함) 1회당 2점 감점 - 무단결강(보강미이행포함)후 보강 한 경우 1회당 1점 감점	-	-													
	학점관리지수	A학점 비율 40% 이하시 1점, 초과시 0점(A학점 산정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 전년도 2학기 및 당해연도 1학기 값을 각각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	1	1													
	강의평가	강의평가 평균점수에 응답율 가중치를 곱한 값 적용 ※ 강의평가 평균점수 및 응답율은 전년도 2학기과 당해연도 1학기의 평균값 적용	5	5													
		응답율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이하							
		가중치				1	0.9	0.8	0.7	0.5							
주당 수업일수	- 3일 2점, 2일 1점, 1일 이하 0점 - 처·단장 2점, 그 외 보직자는 1점을 가함 ※ 1학기 및 2학기 값을 각각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 ※ 1학기 및 2학기 각각의 값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2														
학생지도	학생지도 상담	<table><tr><td>구분</td><td>10회이하</td><td>11~20회</td><td>21회 이상</td></tr><tr><td>1학기</td><td>1점</td><td>1.5점</td><td>2점</td></tr><tr><td>2학기</td><td>1점</td><td>1.5점</td><td>2점</td></tr></table>	구분	10회이하	11~20회	21회 이상	1학기	1점	1.5점	2점	2학기	1점	1.5점	2점	4	4	
	구분	10회이하	11~20회	21회 이상													
1학기	1점	1.5점	2점														
2학기	1점	1.5점	2점														
	재학생 총원율	- 정원 내 재학생수/편제정원 - 평가 기준 참조	15	15													
입시활동	신입생 등록실적	개인별 등록자수 등록자 초과시 평가기준에 따라 가산한다.	30	25													
합 계			70	60													

※ 교육활동 평가 점수는 일반전임교원 60점, 지정형(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 5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평가기준 >

1. 신입생 등록실적

- 개인별 신입생 등록실적은 당해 학년도(신입생 모집학년도) 교수 개인별 신입생 등록자 수(산업체위탁생 제외)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만20세이하) 1명당 1.5점씩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산출하고, 그 외에는 1명당 1점씩 부여한다. <개정 2022.03.01.> <개정 2022.11.01.>
- 신입생 등록실적이 30점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만20세이하) 1명당 1.5점, 그 외에는 1명당 1점을 별도의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때 가산점과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활동을 합한 점수는 16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01.>
- 신규 채용 교원 및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교원의 신입생 등록실적은 대학 평균 실적을 적용한다. <개정 2023.03.01.>
- 개인별 신입생 등록 실적 산정에 있어 희망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총장추천장학금에 의해 수업료 50%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신입생 등록 실적에서 제외한다.

2. 재학생 충원율 <개정 2022.11.01.>

- 충원율은 학과별 재학생 충원율로 당해 연도 4월 1일자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배점한다.(정원 내 재학생수/편제정원)

재학생 충원율	배점	재학생 충원율	배점
100% 이상	15	72% 미만 68% 이상	7
100% 미만 96% 이상	14	68% 미만 64% 이상	6
96% 미만 92% 이상	13	64% 미만 60% 이상	5
92% 미만 88% 이상	12	60% 미만 56% 이상	4
88% 미만 84% 이상	11	56% 미만 52% 이상	3
84% 미만 80% 이상	10	52% 미만 48% 이상	2
80% 미만 76% 이상	9	48% 미만 44% 이상	1
76% 미만 72% 이상	8		

(별표 2-1) 연구활동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구 분	배 점	비 고
논문 및 저술서	10점	
논문 및 저술서외	7점	

※ 논문 및 저술서 및 논문 및 저술서외의 점수를 각각 계산하며, 합계 점수는 일반전임교원은 10점을 지정형(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2) 논문 및 저술서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개정 2022.03.01.>

평가항목	평가 기준	인정 점수	비고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전문, 국제일반 학술지는 제외)	200	
	국내일반학술지: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0	
	국제전문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300	
	국제일반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를 제외한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200	

평가항목	평가 기준	인정 점수	비고
	논문 (SCI급/SCOPUS 학술지를 제외한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논문지’는 국제일반학술지로 구분)		
저술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만 인정(서평 · 편서 · 개정증보판, 교수학습지침서 제외), 상/하권 별도 인정	200	

※ 국내전문학술지와 국제전문학술지는 KRI를 통해 검증

1. 논문실적 기준

가. SCI 정규 논문 인정 기준: WoS(Web of Science) DB에서 검색되면 인정 [※ESC(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제외]

※ WoS에서는 문서유형(Document Type)으로 정규논문 인정 · 불인정 기준을 나누지 않음

나. SCOPUS 정규논문 인정 기준

▶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문서종류: Document Type 4종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조건부 인정)**] *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 논문으로 인정

▶ SCOPUS 정규논문 문서유형 4종 이외의 Document Type은 국제전문학술지로 불인정 [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등]

※ Editorial, Letter, Note (2016년 조사까지는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

※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2013년 조사까지는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

▶ 국내 · 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제외

※ Editorial, Letter, Note, Short-survey : 국제일반 학술지

※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 KRI 학술활동

(별표 2-3) 논문 및 저술서의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평가항목	평가 기준	인정점수	비 고
논문	◦학위논문 - 박사학위 - 석사학위	200 100	
	◦서평, 평론, 번역	30	
저서	ISBN이 수록되지 않은 전문학술 번역서, 교재 개발(교수학습지침서)	100	
	일반학술번역서, 주석서, 작품집, 평문집	70	
	개정 증보판, 교열서, 자료집, 편저	50	
학술대회 발표	국제 주요 학술대회	70	
	국제 일반 학술대회	50	
	국내 주요 학술대회	50	
	국내 일반 학술대회	30	
연구 보고서	국제 연구보고서	100	
	◦국내 연구보고서 - 중앙정부 연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연구보고서	70 50	

평가항목	평가 기준	인정점수	비 고
	◦교내 특별 정책보고서	100	
학술상	국제학술상(저술상, 논문상)	200	
	국내학술상(저술상, 논문상)	150	
창작	국외 출간 또는 공연된 작품	150	
	국내 출간 또는 공연된 작품	100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100	
국제전람회	대상 1회	200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람회 ◦정기적 개최 또는 특별전람회 포함
	입상 1회	150	
	초대작가 출품 1회	150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및 미술대전	대상1회	200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에서 시행하는 전람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시행하 는 전람회
	특선 1회	150	
	입선 1회	100	
	추천작가, 초대작가 출품 1회	50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개인전 1회	200	◦1인이 독립적으로 기획 발표하는 전시회 ◦국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전람회
	국제전시회 출품 1회	150	
	사단법인 주최 단체전 출품 1회	100	
	사단법인 이외의 그룹전 출품 1회	70	
디자인개발연구	제품, 환경, CI, 일러스트, 그래픽 등	100	◦과제당 30점, 연간 상한 100점

1. 학위논문은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구분된다.
2. 기타 논문은 서평, 평론, 번역 등을 말한다. 서평, 평론, 번역은 전문학술지(전문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한다.
3. 서평 및 평론 그리고 번역은 학술서적 및 학술논문 또는 문예작품에 대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학술지(전문지)에 수록된 것에 한한다.
4. 학술대회 발표는 국제주요학술대회, 국제일반학술대회, 국내주요학술대회, 국내일반학술대회의 발표로 구분하고, 반드시 초록집에 발표내용이 수록된 경우 또는 행사일정표에 발표자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추후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연구논문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 국제주요 학술대회는 위 2의 (1)호 학술지를 간행하는 국제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를 말한다.
 - (2) 국내주요 학술대회는 위 2의 (4)호 학술지를 간행하는 국내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를 말한다.
5. 연구보고서는 국제 연구보고서와 국내 연구보고서로 구분하며, 국내 연구보고서는 다시 중앙정부 연구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연구보고서로 구분한다. 위의연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는 산학활동 평가기준의 산,관,학 관련연구과제 수행항목에서 평가 받을 수 있다.

교내 특별 정책보고서는 산학협력보고서 이외의 대학 정책상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해당부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학술상은 국제학술상과 국내학술상으로 구분되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가 학술적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한 논문상 및 저술상을 말한다.
7. 창작은 국내외에서 출간되거나 공연된 문예작품과 설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말한다.

(별표 2-4) 논문 환산율 기준

1. 연구실적은 이종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논문 및 저술서 및 논문 및 저술서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정 환산율	비 고
1인 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0%	

3. 연구활동 평가기준 환산 점수 <개정 2020.04.01>

논문 및 저술서		논문 및 저술서의	
인정점수	점수	인정점수	점수
250점 이상	10.0	200점 이상	7.0
230점 이상 250점 미만	9.5	180점 이상 200점 미만	6.5
240점 이상 250점 미만	9.0	160점 이상 180점 미만	6.0
220점 이상 230점 미만	8.5	140점 이상 160점 미만	5.5
210점 이상 220점 미만	8.0	120점 이상 140점 미만	5.0
200점 이상 210점 미만	7.5	100점 이상 120점 미만	4.5
190점 이상 200점 미만	7.0	90점 이상 100점 미만	4.0
180점 이상 190점 미만	6.5	80점 이상 90점 미만	3.5
170점 이상 180점 미만	6.0	70점 이상 80점 미만	3.0
160점 이상 170점 미만	5.5	60점 이상 70점 미만	2.5
140점 이상 160점 미만	5.0	50점 이상 60점 미만	2.0
120점 이상 140점 미만	4.5	40점 이상 50점 미만	1.5
100점 이상 120점 미만	4.0	30점 이상 40점 미만	1.0
80점 이상 100점 미만	3.5	20점 이상 30점 미만	0.5
30점 이상 80점 미만	3.0	20점 미만	0

(별표 3) 봉사활동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개정 2022.03.01.> <개정 2023.03.01.>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교내봉사	교내 위원	대학 규정에 따른 1개 이상 위원 위촉시 1점(행정보직 점수와 중복 가능)	1	
	학생 지도	학생단체활동(동아리) 지도교수(전공 및 취업동아리 제외)	2	
		대학 주관 봉사활동 참여(직접 참여, 인솔 교수 등) 1회 1점	4	
	기타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 1회 1점	3	
		대학주관 교육 참여(성희롱, 성폭력, 장애인식, 교직원 연수 등) 1회 0.5점	2	
		입시홍보 관련 행사 및 고교 특강 1회 1점 ※ 입학홍보과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하며, 입시홍보를 위한 단순 고교방문은 제외	3	
교외봉사	기관 및 학회(술) 활동	국가고시, 산업인력공단 등 시험위원, 출제위원 등, 1회당 1점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위원회 위촉 1회당 0.5점	1	
		학회 임원 위촉	1	
		대외 평가위원 활동 1회당 1점	1	
		지역규모 이상 대회 심사위원(심판) 1회당 1점	1	
	언론 홍보활동	논평, 서평, 잡지 기고 및 게재, 신문투고 및 게재(단순 보도자료 제외) 1회 1점	3	
		TV 또는 라디오 출연 1회 1점	3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기타 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1회 1점	2	
		지역사회 강연 및 특강(교육)	2	
	교내외 수상	정부기관장상 수여	3	
		이사장상, 총장, 지방자치단체장상 수여	2	
합 계			35	

< 평가기준 >

1. 봉사활동은 당해 연도 실적을 평가하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일반전임교원은 10점을 지정형(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적물은 이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별표 4) 산학협력 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개정 2022.03.01.> <개정 2024.02.22.>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일반	산중	비 고
취업지도	취업률	건보 및 국세DB취업률	50	50	
산학협력 교육	캡스톤디자인지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담당 및 지도교수 1과목 당 2점	2	4	
	(졸업)작품전시회 및 학술제	<평가기준 참조>	3	3	
	산·관·학 연계 행사나 대회 주최	산·관·학 연계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또는 참여시	3	6	
	대회공모전 지도	대회공모 입상 이상 1건당 1점	2	4	
	현장실습지도	<평가기준 참조>	6	6	
	면허 및 자격증과정	- 자격증반: (5시간 기준)×1점 - 외래강사 포함하여 교육시간을 계산하며 점수는 학과교수 전체에 인정함.	5	3	
	졸업생 추수지도 졸업생 연계 프로그램	- 졸업생 추수지도 1건당 1점 (교수 개인별 인정) - 졸업생리콜교육, 졸업생홍커밍데이 등 졸업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1회 2점 (학과교수 전체 인정)	3	3	
	취·창업 강좌 운영	<평가기준 참조>	2	2	
	학생창업지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도한 실적(재학생 및 당해연도 졸업생의 창업실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학생창업 지원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있는 경우 인정)	2	4	
	전공(취·창업)동아리 지도	1개 동아리에 1명의 지도교수가 지도시 2점	2	4	
산학협력 연구	외부기관 특강	- 외부기관 특강 1시간당 1점 -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1강좌당 1점 - 평생교육원 특별과정 1시간당 0.5점	2	2	
	산학협력 연구보고서	- 중앙정부 및 전국규모 연구소 이상의 연구소 연구 보고서 -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연구보고서 - 산업체 연구보고서 - 대학주관 보고서 참여 - 대학 정책 제안보고서(자율)(채택 건에 한함) - 사전 승인 받은 건에 대해 1건당 2점	2	6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단 수익액의 총액 또는 수익사업 실시 건수에 따라 배점 <평가기준 참조>	2	2	
	학술 및 융역 연구비 수혜 (산·관·학 공동연구)	학술 및 융역 연구비 수혜액의 총액 또는 학술 및 융역 연구사업 실시 건수에 따라 배점 <평가기준 참조>	2	2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일반	산중	비 고
	대학발전 기여	본 대학교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유치실적 산업체 장학금 유치 실적 <평가기준 참조>	2	2	
	대학차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교수별 세부프로그램 수행실 적(혁신, RISE 등)	프로그램 수행 1건당 1점	2	4	
산학역량 강화	교수 창업	산학협력단 인정 교수 창업 및 운영 <평가기준 참조>	1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문 닥터	결과보고서 1건당 1점 <평가기준 참조>	1	2	
	산업체 기술이전 및 기술 자 문·지도	산업체 기술이전 및 기술 자문·지도 실시시 배점 (사전 승인에 한함) - 무료 1건당 1점(최대2점) - 유료 1건당 2점(최대2점), ※ 유료 1건당 기술료 100,000원 이상	2	4	
	계열(학과) 가족회사 협약 및 운영 관리(신규 발굴, 취업연 계 및 공동기술개발 등)	1건당 1점	3	4	
기타활동	특허 및 실용신안	국제발명 특허, 국내발명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신제품 인증 건당 1점	1	2	
계			100	120	

※ 산학활동 평가 점수는 일반전임교원 80점, 지정형(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 10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산학활동은 당해 연도 실적을 평가하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실적물은 이중으로 평가될 수 없다.

< 평가기준 >

1. 취업률

배점	취업률	배점	취업률
8	40% 미만	26	59%이상 60%미만
9	40%이상 42%미만	28	60%이상 62%미만
10	42%이상 44%미만	30	62%이상 64%미만
11	44%이상 46%미만	32	64%이상 66%미만
12	46%이상 48%미만	34	66%이상 68%미만
13	48%이상 50%미만	36	68%이상 70%미만
14	50%이상 52%미만	38	70%이상 73%미만
15	52%이상 53%미만	40	73%이상 76%미만
16	53%이상 54%미만	42	76%이상 79%미만
17	54%이상 55%미만	44	79%이상 82%미만
18	55%이상 56%미만	46	82%이상 85%미만
20	56%이상 57%미만	48	85%이상 90%미만
22	57%이상 58%미만	50	90%이상
24	58%이상 59%미만		

※ 건보 및 국세DB 취업률은 3년 전 후기졸업생 및 전전년도 전기졸업생에 대한 전전년도 12월 31일 건보 및 국세 DB 연계 신규취업률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와 취업대상자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 평균 신규취업률을 적용한다.

2. (졸업)작품전시회 및 학술제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한 작품을 제작(창작)한 설계물을 교내외에 전시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 실적(학사 운영처에 행사승인신청서에 지도교수를 명시한 인원만 인정, 다수 가능)

3. 현장실습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현장 중간점검 및 지도방문하여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아래의 실적 현황, 지도결과 확인) <개정 2022.09.01.><개정 2024.02.22.>

① 현장실습학기제 대상학과 참여 실적

평가기준	인정점수
2주 이상 지도 학생 수	1명당 2점
4주 이상 지도 학생 수	1명당 3점

② 현장실습학기제 비대상학과 참여 실적

평가기준	인정점수
2주 이상 지도 학생 수	1명당 1점
4주 이상 지도 학생 수	1명당 2점

※ 비대상학과 : 별도 법령 및 현장실습학기제 규정 4-37 제3조(적용제외)에 의거하여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학과(계열)

※ 교육과정상 현장실습이 없는 학과(계열) 교원의 현장실습지도 실적은 대학 평균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적용한다.

※ 학과(계열)의 교육과정 운영상 현장실습 지도 배정이 없는 교원, 장기 출장, 연수, 휴직등의 사유로 현장실습 지도를 못할 경우 현장실습지도 실적은 학과(계열) 평균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적용한다.

4. 취업(창업) 강좌 운영

- 취업(창업) 강좌(교과목 강의) 운영: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배점하되, 정규강좌운영은 과목 운영 시 1점 배점한다.

- 비정규 강좌 운영: 외래강사 포함하여 교육시간당 0.5점으로 계산하며 점수는 학과교수 전체에 인정한다.

5. 수익사업 실시분야 배점은 산학협력단에 연간 기여한 재정적 수입액의 총액 또는 수익사업 실시 건수에 따라 배점한다. 예) 생활과학교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 대학의 각종 사업 유치를 통한 수입을 포함하며, 이 경우 대학 교비 수입에 기여한 재정적 수입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03.01.>

산학협력단 수입액(수입금액÷해당자수)	수익사업 실시 건수	배점
3천만원 이상	2건	2.0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건	1.0
5백만원 미만		0.5

6. 학술 및 용역연구비 수혜는 수혜액의 총액 또는 연구사업 실시 건수에 따라 배점하되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22.03.01.>

학술 및 용역 연구비 수혜액 (수입금액÷해당자수)	학술/용역 연구사업 실시 건수	배점
3천만원 이상	2건	2.0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건	1.0
5백만원 미만		0.5

7. 학교발전 기여는 실험실습기자재,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 본 대학교 재정에기여한 금액에 따라 배점한다.

대학 수입액(수입액÷기여자수)	0배점
1천만원 이상	2.0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5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0
1백만원 이하	0.5

8. 교수창업은 겸직 허가를 득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창업한 첫해에는 연간매출액에 관계없이 1점을 배점하고, 이후에는 연간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점한다.

연간매출액	배점
2,000만원 이상	1.0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0.5

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문닥터란 본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1년간 계속하여 지도, 보육할 목적으로 임명하는 전문닥터로 연간 지도·보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된 경우에 2점을 배점한다.

(별표 5) 수범활동평가기준 <개정 2020.04.01.> <개정 2022.11.01.> <개정 2024.02.22.>

평정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평정자	총장 (인)
------	----------------------	-----	--------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점 수
교수자질 (품의/태도)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성 유지하고 있다.	10	
	교수학습에 적극적이고 헌신하고 있다.		
	교수로서의 근무태도가 올바르며,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협조성	학과 업무(학생지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5	
	대학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화합하고 있다.		
대학발전 기여도	대외 활동이 활발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	
	대학(학과)발전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책사업 등 주요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 발전 가능성	교수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5	
	대학 발전을 위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		
계		40	

(별지 서식1)

교원업적평가서

아래 본인의 업적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증빙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평정대상기간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평정구분		()일반트랙, ()산학트랙(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트랙(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적 사항	소속	○○○○계열/학과
	직급	
	보직명	
	성명	○○○ (인)
제출일		20 년 월 일

1. 연구활동 실적(20 년도)

구분	연구 실적					비고
	평가항목	논문 등 제목	게재지	게재일	연구자 수	
논문 및 저술서	연구논문					
	저술					
논문 및 저술서외	논문					
	저서					
	학술대회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상					
	창작					
	국제전람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및 미술대전					
	국내외 전시회					
	디자인개발연구					

※ 증빙자료 첨부 바람.

※ (별표 2-2) 논문 및 저술서 평가기준, (별표 2-3) 논문 및 저술서외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실적을 제출바람.

※ 게재예정일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첨부 바람.(실적물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출)

- 게재예정일은 12월 31일까지 인정됨.

2. 봉사활동 실적(20 년도)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증빙첨부	구분
교내봉사	교내 위원	대학 규정에 따른 1개 이상 위원 위촉시 1점(행정보직 점수와 중복 가능)		0, X	위원 건수
	학생 지도	학생단체활동(동아리) 지도교수(전공 및 취업동아리 제외)			동아리명
		대학 주관 봉사활동 참여(직접 참여, 인솔 교수 등) 1회 1점			참여횟수
		비교과 RC프로그램 지도 1회 1점			지도횟수
	기타 봉사	대학주관 교육 참여(성희롱, 성폭력, 장애인식, 교직원 연수 등) 1회 0.5점			참여횟수
		입시홍보 관련 행사 및 고교 특강 1회 1점			참여횟수
교외봉사	기관 및 학회(술) 활동	국가고시, 산업인력공단 등 시험위원, 출제위원 등, 1회당 1점			참여횟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위원회 위촉 1회당 0.5점			위촉 건수
		학회 임원 위촉			위촉건수
		대외 평가위원 활동 1회당 1점			활동 건수
		지역규모 이상 대회 심사위원(심판) 1회당 1점			참여 횟수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증빙첨부	구분
	언론 홍보활동	논평, 서평, 잡지 기고 및 게재 신문투고 및 게재 1회 1점			개재 횟수
		TV 또는 라디오 출연 1회 1점			출연 횟수
	기타 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1회 1점			활동 횟수
		지역사회 강연 및 특강(교육)			특강 건수
	교내외 수상	정부기관장상 수여			수여 건수
		이사장상, 총장, 지방자체인체장상 수여			수여 건수

※ 증빙자료 첨부 바람.

3. 산학활동 실적(20 년도) <개정 2022.03.01.><개정 2023.03.01.><개정 2024.02.22.>

항 목	세부항목	실적	증빙첨부	비 고
취업지도	취업률		0, X	입학·대외협력처 작성
산학협력 교육	캡스톤디자인지도			과목수
	(졸업)작품전시회 및 학술제			개최 건수
	산·관·학 연계 행사나 대회 주최			주최 또는 참여 횟수
	대회공모전 지도			입상 건수
	현장실습지도			현장실습지원센터 작성
	면허 및 자격증과정			운영 건수 및 시간
	졸업생 추수지도, 졸업생 연계 프로그램			지도 건수
	취·창업 강좌 운영			운영 건수
	학생창업지도			지도 실적 건수
	전공(취·창업)동아리 지도			지도 동아리 수
	외부기관 특강			특강 건수 및 시간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건수
	산학협력수익			수익 금액
	학술 및 응용 연구비 수혜 (산·관·학 공동연구)			수혜 금액
	대학발전 기여			유치 금액
	대학차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교수별 세부프로그램 수행실적(혁신, RISE 등)			참여 건수
	계열(학과) 가족회사 협약 및 운영 관리(신규 발굴, 취업연계 및 공동기술개발 등)			실적 건수
산학역량 강화	교수 창업			창업 건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문닥터			작성 건수
	산업체 기술이전 및 기술 자문·지도			실적 건수
기타활동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 증빙자료 첨부 바람.

※ (별표 4) 산학활동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실적을 제출바람.

※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됨.

4. 수범활동 실적(20 년도)

자기 기술서(별지작성 가능)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별지 서식2) <개정 2022.03.01.> <개정 2022.11.01.> <개정 2024.02.22.>

년도 전임교원 업적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직급	평가구분	일반트랙	평정자	총장	(인)
	성명						

구분	평가항목	실적	배점(일반)	배점(산학)	평가점수(일반)	평가점수(산학)	환산점수
교육 활동 일반 트랙 (60점) 산학 트랙 (50점)	교육과정 개발(개선) 또는 평가		2	2			
	교수 역량 개발		2	1			
	특수교과목 개발 및 교육 운영		2	1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		2	2			
	강의시간		5	2			
	강의 이행상태		-	-			
	학점관리지수		1	1			
	강의평가		5	5			
	주당 수업일수		2	2			
	학생지도 상담		4	4			
	재학생 총원율		15	15			
	신입생 등록실적		30	25			
합 계			70	60	0	0	0.0
신입생 등록실적 가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목(발표회명)	발표일자	게재지 (발표장소)	저자수	인정점수	환산점수			
연구 활동 일반 트랙 (10점) 산학 트랙 (5점)	논문 및 저술서	논문									
		저술									
	논문 및 저술서 외	논문									
		저서									
		학술대회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상									
		창작									
		국제전람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및미술대전									
		국내외 전시회									
		디자인개발연구									
		합 계							0	0.0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환산점수
봉사 활동 일반 트랙 (10점) 산학 트랙 (5점)	교내봉사	교내 위원	대학 규정에 따른 1개 이상 위원 위촉시 1점(행정보직 점수와 중복 가능)	1		
		학생 지도	학생단체활동(동아리) 지도교수(전공 및 취업동아리 제외)	2		
			대학 주관 봉사활동 참여(직접 참여, 인솔 교수 등) 1회 1점	4		
			비교과 RC프로그램 지도 1회 1점	3		
	기타 봉사		대학주관 교육 참여(성희롱, 성폭력, 장애인식, 교직원 연수 등) 1회 0.5점	2		
			임시홍보 관련 행사 및 고교 특강 1회 1점	3		

교외봉사	기관 및 학회(술) 활동	국가고시, 산업인력공단 등 시험위원, 출제위원 등, 1회당 1점	1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 위원회 위촉 1회당 0.5점	1		
		학회 임원 위촉	1		
		대외 평가위원 활동 1회당 1점	1		
		지역규모 이상 대회 심사위원(심판) 1회당 1점	1		
	언론 홍보활동	논평, 서평, 잡지 기고 및 게재 신문투고 및 게재 1회 1점	3		
		TV 또는 라디오 출연 1회 1점	3		
	기타 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1회 1점	2		
		지역사회 강연 및 특강(교육)	2		
	교내외 수상	정부기관장상 수여	3		
		이사장상, 총장, 지방자체단체장상 수여	2		
	합 계		35	0	0.0

구분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일반)	배점/(산학)	평가점수(일반)	평가점수(산학)	평점
산학 활동 일반 트랙 (80점) 산학 트랙 (100점)	취업지도	취업률	50	50			
	산학협력 교육	캡스톤디자인지도	2	4			
		(졸업)작품전시회 및 학술제	3	3			
		산·관·학 연계 행사나 대회 주최	3	6			
		대회공모전 지도	2	4			
		현장실습지도	6	6			
		면허 및 자격증과정	5	3			
		졸업생 추수지도, 졸업생 연계프로그램	3	3			
		취·창업 강좌 운영	2	2			
		학생창업지도	2	4			
		전공(취·창업)동아리 지도	2	4			
		외부기관 특강	2	2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연구보고서	2	6			
		산학협력수익	2	2			
		학술 및 용역 연구비 수혜 (산·관·학 공동연구)	2	2			
		대학발전 기여	2	2			
		대학차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교수별 세부프로그램 수행실적(혁신, RISE 등)	2	4			
	산학역량 강화	교수 창업	1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문닥터	1	2			
		산업체 기술이전 및 기술 자문·지도	2	4			
		가족회사 협약 및 운영 관리	3	4			
	기타활동	특허 및 실용신안	1	2			
합 계			100	120	0	0	0.0

수범 활동(40)				평가점수		0	
작성일자		20		총 점 (200점만점)		0.0	
작성자		(인)					

